

2021년 「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」 지원사업장 수시 모집 공고

노사발전재단은 기업 내 안정적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안착을 위해 「2021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」 지원 사업장 수시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10. 26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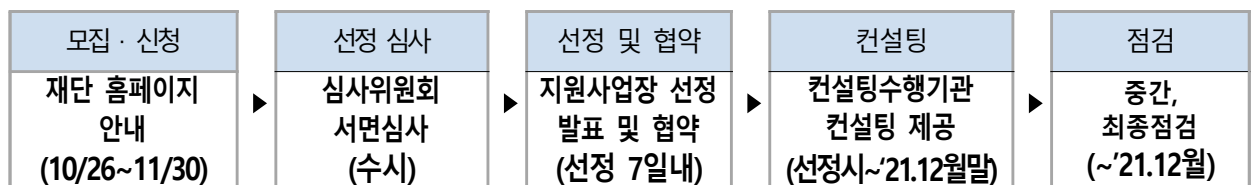
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

1 사업 개요

- 사업명: 2021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
- 사업목적: 의무대상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안착을 위해 컨설팅 지원
- 운영기관: 노사발전재단
- 지원대상: **총 450개소 (의무대상 기업 400개소, 900~999인 기업 50개소)**
 ※ '매월 산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해당되는 사업장'(20년 '21년 기준)
- 지원내용: 컨설팅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및 운영, 성과관리체계 관련 컨설팅 제공

구분	기초컨설팅	전문컨설팅
대상	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없는 기업 등	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있는 기업 등
내용	① 재취업지원서비스 인식 개선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 체계 구축 ③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체계 구축 ④ 재취업지원서비스 성과평가 체계 구축	① 재취업지원서비스 개선사항 진단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담인력 역량강화 ③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체계 강화 ④ 재취업지원서비스 유형별 성과관리 진단

□ 사업절차



※ 단, 수행기관과 기업 협의를 통해 '22.1월까지 보완 서비스 제공 가능

□ 모집개요

○ 접수기간: 수시 (~'21.11.30.까지 이메일 접수)

○ 컨설팅 분야: 기초컨설팅, 전문컨설팅 중 선택

구 분		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내용	
지원 사업장수		▶ 총 450개소 : 400개소(의무화 기업) + 50개소(900~999인 기업)	
컨 설 팅 세 부 내 용	기초 컨설팅	대상 (우선순위)	(1)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없는 기업 (2)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은 있으나 최근 3년간 실시한 경험이 없는 기업 (3)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은 있으나, 법령 등 요건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기업 (4) 기타, 희망하는 기업
		내용	① 재취업지원서비스 인식 개선 - 경영진, 서비스 대상자 등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 내용, 의무제도 시행 등 서비스 이해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 체계 구축 - 서비스 대상자 선정, 서비스 종류 및 주관기관 결정 등 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 수립 ③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체계 구축 - 기업여건, 업·직종 특성 등에 따른 적합한 서비스 유형(진로 설계, 취업 및 창업교육, 취업알선 등)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, 상담 등 운영 체계 수립 - 정부지원제도 활용 방안 점검 ④ 재취업지원서비스 성과평가 체계 구축 - 서비스 종류에 따른 적합한 성과평가 체계 수립 ※ 재취업지원서비스 파일럿프로그램 제공
	전문 컨설팅	대상 (우선순위)	(1)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있는 기업 (2) 기타, 희망하는 기업
		내용	① 재취업지원서비스 개선사항 진단 - 기존에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보완 전략 수립 - 정부지원제도 활용 방안 점검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담인력 역량강화 - 기업담당자 교육 연계 및 1:1 전문가 코칭 ③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체계 강화 - 연령별 세분화된 서비스 운영 및 생애주제별 심층상담 지원 체계 수립 ④ 재취업지원서비스 유형별 성과관리 진단 - 서비스 성과 환류에 따른 관리 방안 강화 ※ 재취업지원서비스 파일럿프로그램 제공

- 비 용: 전액 무료지원
- 컨설팅 기간: 선정시 ~ '21. 12. 31. 까지(단, 필요에 따라 1개월 연장 가능)
- 컨설팅 방식: 컨설팅수행기관 전문컨설턴트가 직접 컨설팅 수행
- 희망 컨설팅수행기관 표기: 11개사 중 택 1개사

컨설팅 수행기관	라이트매니지먼트	맥시머스	스텝스	인지어스
	임팩트그룹코리아	제이엠커리어	케이잡스	한국능률협회
	한국능률협회컨설팅	한국생산성본부	한국표준협회	(무관)

※ 가나다 순

※ '무관' 선택시 컨설팅수행기관 임의 배정

신청자격

① 재취업지원서비스 1,000인 이상 의무사업장

※ '20년 기준으로 매월 산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,000인 이상인 사업장

②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원하는 900~999인 사업장

※ '20년 기준으로 매월 산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900~999인에 해당되는 사업장

③ 위의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고, 고용보험료를
체납하지 않은 사업장

<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신청제한>

-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
-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시행규칙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
신청방법: 개별 PDF파일로 E-MAIL 제출

- 이메일: newstart@nosa.or.kr
- 메일제목: 기업컨설팅신청(기업명)

신청서 및 구비서류

-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(사업공고)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
- 신청관련 서류는 지원사업장 선정에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함

- 구비서류의 원본이 필요 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번호	서류	작성 및 제출방법	
1	컨설팅 신청서	양식에 맞춰 작성	1개 파일로 이메일 제출
2	정보활용 동의서		
3	사업자등록증	사본	
4	고용보험 완납증명원	신청일 전 1개월 이내 증명원	

3

지원사업장 선정기준 및 결과 발표

- 선정방식: 심사위원회 서류심사를 통해 수시 선정

구분	1,000인 이상 의무대상 기업	900~999인 기업
우선 선발 기준	① 서비스 시행 경험이 없는 기업 ② 21년 기준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 <u>인원비율이 높을수록 가점</u> ③ 22년 서비스 시행을 위해 운영체계 구축·개선 필요	① 서비스 시행 경험이 없는 기업 ② 21년 기준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 <u>인원비율이 높을수록 가점</u> ③ 22년 서비스 시행을 위해 운영체계 구축·개선 필요

- 사전 유선진단(심사 및 컨설팅 수행 기초자료 활용)이 진행될 수 있음

- 결과발표: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(이메일 안내)

문의: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팀 (T.02-6021-1157, 1163, 1161, 1145)